

## KCP 전자결제 계약서류 발송 전 체크사항

KCP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CP 계약 진행 시 체크하셔야 할 구비서류 리스트입니다. 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된 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서 수신 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에 따라 제출하실 서류가 틀립니다. 사업자 확인 후 체크해주세요.

(해당 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업자 구분	KCP 제출하실 서류	확인[√]
개인사업자	KCP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 원본 1부 <b>(자필서명)</b> • 공동대표 모두 필요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 공동대표 모두 필요	<input type="checkbox"/>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대표자 또는 상호명의 계좌만 가능) • 제3자 통장계좌인 경우 계좌변경요청 및 확약서 원본 제출	<input type="checkbox"/>
법인사업자	KCP 서비스 계약서 원본 1부 <b>(법인인감도장 날인)</b> • 공동대표 모두 필요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동대표 모두 필요	<input type="checkbox"/>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제3자 통장계좌인 경우 계좌변경요청 및 확약서 원본 제출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KCP 서비스 계약서 원본 1부 (기관 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식 인장으로 날인)	<input type="checkbox"/>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인장확인서 원본 1부 • 인장확인서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처리불가	<input type="checkbox"/>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제3자 통장계좌인 경우 계좌변경요청 및 확약서 원본 제출	<input type="checkbox"/>

## KCP 전자결제 계약서류 발송 전 체크사항

계약 구비서류를 보내시기 전 확인해주세요.  
 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된 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서 수신 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에 따라 제출하실 서류가 틀립니다.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확인 [√]
1. 계약서 (갑)란에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작성 후, 「서명/인」란에 개인사업자는 자필서명,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도장 날인 하셨습니까? (공동대표 모두 필요)	<input type="checkbox"/>
2. 유예특약으로 계약하신 사업자입니까? 유예특약 가입 대상자는 계약안내메일 내용 중 서류발송부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안내메일에서 계약서류발송 사항 확인 후 작성하여 첨부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3.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가 제3자 통장일 경우 계좌변경요청 및 확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보내실 곳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시면 <b>분실</b> 우려가 있습니다. <b>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을 발송</b> 해주세요.
우편번호: 08377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5층 504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1차) 한국사이버결제(KCP) - 전자결제 PG운영팀 담당자 앞

# KCP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계약서

다음 약관은 귀사와 주식회사 한국 사이버결제 간의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과 “을” 사이에서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갑”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을”이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하 '결제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배지승인(자동승인)서비스를 포함한다.

나. 계좌이체서비스: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가상계좌서비스: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시스템 또는 가상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대폰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ARS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ARS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 상품권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상품권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상품권발행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 교통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교통카드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교통카드발행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3자가 물품 및 용역 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이용자의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인터넷쇼핑몰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3. 지불정보: 이용자가 “갑”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소액결제정보(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기과 등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

4. 거래승인: 결제기관 등이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결제기관 등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한 다는 것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

5. 매입: 거래승인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을”이 “갑”을 대행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

6. 정산: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을”에게 지급된 대금결제액 중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7. 전자결제대행시스템: 거래승인, 매입, 정산, 거래취소 등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전송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갑”의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장 및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을”의 전산시스템

8. 결제대금예치시스템: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한 거래잔액에 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9. 본인확인 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신용카드비밀번호 앞 2자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의 정보가 신용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을”의 전자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갑”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해당 결제 건의 진위성,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서비스 불포함)

10. 인터넷쇼핑몰: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11. 이용자: “갑”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자

12. 표준배송일: “갑”이 판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이용자가 구매대금을 입금완료(현금인 경우)하거나,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승인을 통지 받는 등 구매대금의 지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갑”이 이용자에게 물품 배송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13. 상품확인기간: 물품 배송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이용자가 구매하고자 했던 제품 또는 용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

### 제3조 “갑”, “을”의 의무와 책임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갑”은 이용자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 등에서 을의 명의를 사용되나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는 “갑”이다라는 점과 “을”을 통하여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갑”의 인터넷 쇼핑몰 등의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거래 등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결제대행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을” 명의의 가맹점 명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위 가맹점의 준수 사항을 “을”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갑”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갑”은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거나 유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불결제나 정기과금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때는 “을” 및 '이용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시 보관되는 신용카드 지불정보는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제한된다.

7.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을”의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하여 결제하지 않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갑”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 통한 배송상태를 변경함에 있어 허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배송일 기준 3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용자 및 “을”에게 즉시 유선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을”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3조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된다).

3. “을”은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을”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을”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갑”을 대상으로 배송여부에 대한 확인을 유선, 전자메일, 배송사와의 시스템연계, 기타수단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을”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 시 보관, 저장, 처리, 전송하는 지불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PCI-DSS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비용의 부담

① “을”은 “갑”이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② “갑”이 설치하는 장비 및 회선의 설치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③ 기타 전자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 제5조 서비스 이용 조건

①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는 “을”이 제휴한 신용카드사등에 한한다.

②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자는 “을”이 제휴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회원, 은행계좌의 보유자, 무선이동통신가입자 기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적용되는 “갑”의 판매 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제6조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을”은 제공하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②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없거나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갑”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⑤ “갑”은 이용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또는 현금을 이용하여 결제 완료한 경우 거래발생일로부터 표준배송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고, “을”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⑥ “갑”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을”은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 제7조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

① “갑”은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을”에게 소정의 등록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의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록수수료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업무원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갑”이 “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을”을 통해 제공 받은 경우, “갑”은 본 계약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게 소정의 연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회비의 액수, 지급시기 등은 1년 단위로 “을”이 정한 바에 따르며, 부과 전후에 “을”이 제공하는 공지 방식을 통해 “갑”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⑥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는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수수료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 제8조 서비스 수수료

① “갑”은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갑”과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율 및 금액에 의한다.

③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 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⑤ “을”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회(월말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한다.

### 제9조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

①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과 “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제공한 '전자결제대행시스템 및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권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1.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금액은 “갑”의 거래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민원 등 “을”이 “갑”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 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2. “을”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3.본 계약기간중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에치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 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을”은 2 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 제10조 해외발행 신용카드

① 해외발행 신용카드는 “을”과의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에 위반한 거래로 인한 책임은 “갑”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② “을”은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 건에 대하여 향후 거래취소 등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건의 비정상적 증대의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거래승인

①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자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③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가 제공한 신용카드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의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제12조 매킨

① 본 계약에 의한 매킨대상 거래는 결제기관 등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 한한다.  
 ② “갑”은 거래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킨을 요청하여야 하며, “을”은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물품배송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킨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자동매킨신청가맹점 제외)  
 ③ “갑”의 결제기관 등에 대한 매킨청구의 주기는 “을”과 결제기관 등과의 합의에 의한다.

#### 제13조 정산

① “을”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정산대금을 본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결제대금에치 서비스의 정산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을”은 “갑”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물품 수령 및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한 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물품 수령 또는 용역 제공 사실을 “을”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갑”의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상품 배송에 대한 이의(미배송, 지연, 환불의사 표현)를 제기하지 않고서도 물품 수령 후 2영업일 이내에 또는 갑의 배송정보등록 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승인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2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등 배송주기가 일반적인 물품의 배송주기보다 현저히 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은 “을”이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을”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  
 ③ “갑”이 지정한 은행이 “을”과의 거래가 없는 은행인 경우에는 “갑”이 은행 이체 지급수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정산대금은 “갑”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 9 조 제 3 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14조 지급보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은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갑”이 취소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환입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갑”이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갑”의 매킨요청내역이 결제기관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5. “갑”이 제3 조 제1항 제9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갑”이 제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갑”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8. 제3조로부터 “갑”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9. “갑”이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에치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10. 전 호의 이용종단에 따른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보류 2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②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예정인 자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15조 거래취소

①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갑”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 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갑”의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 등이 “을”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그 요청내역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와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을”이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거래 취소건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을”은 정산대금의 지급보류시 “갑”에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사유 해소로 “갑”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 “을”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⑦ 제 5 조 ③항에서 정한 “을”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갑”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하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16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

①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에 대하여 제14조(정산대금의 지급보류) 및 제15조 제4항(차기 정산대금에서의 공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 2 항, 제 3 항의 경우, “갑”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을”은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 자료의 보관 등

① “갑”은 물품의 배송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을”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매출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4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을”이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

“갑” 및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을”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을”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 통보가 “갑”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3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을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채납처분,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3.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갑”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을”에게 3회 이상 심각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5.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을”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갑”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한 경우  
 ③ 전항의 사유로 “을”이 계약 해지 시, “을”은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2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갱신 불원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 제22조 기타(무이자, 이벤트 행사, 유의사항 등)

①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갑”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방식과 다른 형태로 공지하거나, 오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 “갑”이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 시 제공한 대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갑”의 대표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전자우편주소로 공지를 전달 받기 원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갑”의 대표 전자우편주소의 변경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⑤ 결제서비스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신용카드사로부터 매킨, 취소 반송된 거래건은, “갑”의 책임으로 재요청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좌이체,가상계좌서비스  
 “갑”은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입금 완료 후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갑”은 결제대금에치서비스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산 전에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3. 휴대폰결제, ARS결제, 상품권결제  
 “갑”은 당월 거래 건에 한하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3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은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사업자정보/계약사항**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과세유무	<input type="checkbox"/> 과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이트주소			법인번호			
	대표자이름			대표자생년월일			
	업태			종목			
	사업장주소						
실무사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이름			부서명/직위			
	긴급연락처			E-mail 주소			
계약사항	결제서비스	일반대행수수료 (VAT 별도)	일반대행기	결제서비스	결제대금예치수수료 (VAT 별도)	결제대금예치기	
	신용카드	%	<input type="checkbox"/> 일정산 일 '매입요청'시정기준 소영업일 후 입금	신용카드 에스크로	%	배송확인거래 2일 이용자 배송확인 기준	
	실시간계좌이체	%	<input type="checkbox"/> 주정산 일 매월 월 4회 입금	계좌이체 에스크로	%	배송미확인거래 7일 배송정보등록일 기준	
	가상계좌결제	원	<input type="checkbox"/> 15일 정산 매월 7,22일/월 2회 입금	가상계좌 에스크로	원	보류요청거래 취소 또는 재배송 요청시까지 보류	
	휴대폰결제	%	M+3개월	추가서비스	%	월 회	
	A R S 결제	%	M+2개월	추가서비스	%	월 회	
	문화상품권	%	M+1개월	추가서비스	%	월 회	
	도서문화상품권	%	M+1개월	추가서비스	%	월 회	
	해피머니상품권	%	M+1개월	보증금	보증보험 만원	기타담보	
	배치승인 (자동승인)	%	특약에 정함	등록비용	등록수수료 원	연회비 원	
	기타사항						
	첨부서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통장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대표자 또는 회사명인의 통장사본					

(주)한국사이버결제의 가맹점 계약사항을 숙지하고 상기와 같이 인터넷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갑)

상호명 :

주소 :

대표자(대표이사) :       (서명/인)

(을)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5층(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대표이사   송 윤 호   (서명/인)



※ 개인사업자 : 자필서명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도장날인